

# 지역기업지원센터(RIS) 운영 규정

2025. 08. 01. 최초제정

2025. 11. 21. 부분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의 핵심 역량 특화 분야인 바이오헬스, 스마트헬스, 웰니스 분야의 융·복합 분야의 브랜드 창출과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지역기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사업 및 업무)** 본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사업의 특화 센터 선정 및 운영 지원
2. 특화 분야 브랜드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등 서비스 창출
3. 특화 분야 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
4. 국내외 기술 협력 지원
5. 관계 기관·학과·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6. 소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7. 산업체 등에 공동장비 활용 지원<신설 2025.11.21.>
8. 공동장비활용 네트워크 구축<신설 2025.11.21.>
9. 산학협력 공동장비 인프라 구축<신설 2025.11.21.>
10. 공동장비 이용자 교육<신설 2025.11.21.>
11. 그 밖의 공동장비 활용 및 산학협력 사업<신설 2025.11.21.>

## 제2장 조직

**제4조(조직)**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별도의 팀을 둘 수 있다.

**제5조(센터장 및 팀원)** ①본 센터는 지역기업지원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.

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.

③팀원은 센터의 사업 관련 교수 및 관련 직원으로 구성한다.

## 제3장 위원회

**제6조(명칭)** 본위원회는 지역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7조(위원회의 구성)**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회는 대학 구성원으로 교원 및 직원으로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RISE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 단,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.

2.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,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3.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RISE사업단장이 위촉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.

1.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 및 결산 자문에 관한 사항
3.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
4. 센터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의 관한 사항
5. 센터의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
6. 센터의 제반 사업운영의 자문에 관한 사항
7.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

**제9조(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재정

**제10조(수당지급)** 특화 센터 별 수입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교내 장학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.

**제11조(수입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센터 수익금
2. 교육 수익금
3. 기부금 및 보조금
4. 학교 지원금
5. 기타 수입금

**제12조(지출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, 등록에 필요한 비용
2. 시설·장비 구축과 사무용품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
3. 참여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인센티브
4. 사업 신청에 필요한 대응자금
5.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

**제13조(사업연도)** 센터의 사업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4조(적립금)** 센터는 수입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예외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재정지원의 상위기관, 관련법령 및 대학의 제규정에 따른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